2024년 귀속 소득ㆍ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내역 [건강보험료]

(조회기간 : 2024년 01 ~ 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강상구	741225-*****

■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내역

(단위:원)

월별	보수월액(고지금액)	소득월액(납부금액)	
결글	건강보험료①	장기요양보험료②	건강보험료③	장기요양보험료④
01월	238,350	30,780	0	0
02월	226,680	29,350	0	0
03월	226,680	29,350	0	0
04월	209,550	27,130	0	0
05월	209,550	27,130	0	0
06월	209,550	27,130	0	0
07월	209,550	27,130	0	0
08월	209,550	27,130	0	0
09월	209,550	27,130	0	0
10월	208,440	27,000	0	0
11월	221,560	28,690	0	0
12월	221,560	28,690	0	0
연말정산	-181,830	-23,250		
합계	2,418,740	313,390	0	0
총합계				2,732,130

1. 보수월액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 (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에는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

-1-

2. 소득월액 보험료 :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귀속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기본내역 [고용보험료]

(조회기간 : 2024년 01 ~ 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강상구	741225-*****

■ 고용보험료 고지내역

(단위:원)

월별	고지금액
01월	57,550
02월	57,550
03월	57,550
04월	7,030
05월	53,200
06월	53,200
07월	53,200
08월	53,200
09월	53,200
10월	52,920
11월	56,250
12월	56,250
합계	611,100

- 1. 고지금액: 근로복지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실제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급액입니다. (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
- 2.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 3. 건설업, 벌목업 사업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국민연금보험료]

(조회기간 : 2024년 01~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강상구	741225-*****

■ 국민연금보험료 내역 (단위:원)

월별	직장가입자 고지금액	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
01월	265,500	0
02월	265,500	0
03월	265,500	0
04월	265,500	0
05월	265,500	0
06월	265,500	0
07월	262,350	0
08월	262,350	0
09월	262,350	0
10월	277,650	0
11월	277,650	0
12월	277,650	0
직장가입자 소급고지금액	0	
추납보험	험료 납부금액	0
실업크레딧 납부금액		0
합계	3,213,000	0
	총합계	3,213,000

- 1. 직장가입자 고지금액: 국민연금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 (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
- ※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근로자는 해당 지원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월별 고지금액이 제공되며, 지원금 공제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 2.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조회기간 : 2024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강상구	741225-*****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상 호		보험종-	류					
종류	사업자번	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납입금액 계		
	종피보험자1(수익자)		종피보험자2(수익자)		·) 종피보험자2(수익자)		종피보험자3(수익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		(무)PCA 가디안	종신보험					
보장성	305-81-08605		961403**	***	741225-*****	강상구	2,089,800		
	삼성화재해상보	.험(주)	무배당 삼성화재 디	나이렉트 운전					
보장성	202-81-45	617	523318**	***	741225-*****	강상구	118,800		
	삼성화재해상보험 (주)		애니카다이렉트_개인용						
보장성	202-81-45617		124S21****		741225-*****	강상구	424,720		
	삼성화재해상보험 (주)		애니카다이렉트_개인용						
보장성	202-81-45	617	124S19****		741225-*****	강상구	377,170		
	인별합계금액						3,010,490		

1.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2. 공제 한도 : 100만원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의료비]

(조회기간 : 2024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강상구	741225-*****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5-26-93*	예****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 입비용	530,000
6-99-00*	소****	일반	418,900
1-40-00*	더****	일반	66,2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485,10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530,000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1,015,100

-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6세 이하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부양가족(700만원)
 -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일련번호: 20250121-03896265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5-

2024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내역 [실손의료보험금]

(조회기간 : 2024년 01~12월)

■ 피보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강상구	741225-*****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

(단위:원)

상호	상품명	보험계약자		스러그에 게
사업자번호	계약(증권)번호	수익자		수령금액 계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빅히트단체상해보험	120-81-04309	비아비솔루션스코리아 유 한회사	87,186
201-81-45593	120242****	741225-*****	강상구	87,100
인별합계금액				87,186

1.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제받아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사용처별)내역 [신용카드]

(조회기간 : 2024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강상구	741225-*****	

■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3년 사용금액 합계	2024년 사용금액 합계
4,971,970	8,043,674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7,611,814	154,000	6,350	271,510	8,043,674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신용카드	375-88-00197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대중교통	6,350
신용카드	213-86-15419	현대카드주식회사	일반	7,611,814
신용카드	213-86-15419	현대카드주식회사	전통시장	154,000
신용카드	213-86-15419	현대카드주식회사	도서공연등	271,510
인별합계금액				8,043,674

- 1. 공제대상: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 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사용처별)내역 [직불카드 등]

(조회기간 : 2024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강상구	741225-*****	

■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3년 사용금액 합계	2024년 사용금액 합계	
6,492,750	8,499,42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7,917,720	3,500	578,200	0	8,499,420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직불카드 등	375-88-00197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일반	5,747,080
직불카드 등	375-88-00197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전통시장	3,500
직불카드 등	104-81-83559	주식회사 티머니	대중교통	578,200
직불카드 등	109-81-53365	코나아이 (주)	일반	2,170,640
인별합계금액				8,499,42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 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0250121-03896265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8-

2024년 귀속 소득ㆍ세액공제증명서류: [현금영수증]

(조회기간 : 2024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강상구	741225-*****

■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3년 사용금액 합계	2024년 사용금액 합계	
3,888,504	3,480,824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주택임차료 거래	합계금액
3,480,824	0	0	0	0	3,480,824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9-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불복·제보>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 2.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주택임차료(월세) 거래분은 일반거래금액으로 계산함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귀속 소득ㆍ세액공제증명서류: [현금영수증]

(조회기간 : 2024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강상구	741225-*****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종류	01월	02월 03월		04월	고레디사그에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09월	10월	11월	12월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163,934	154,058	275,536	210,000	3,480,824
		43,300	418,610	1,027,101	100,900	
		346,094	234,566	373,347	133,378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비등거	0	0	0	0	0
		0	0	0	0	
		0	0	0	0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10-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 상담·불복·제보>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 2.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주택임차료(월세) 거래분은 일반거래금액으로 계산함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지출처별)내역 [연금저축]

(조회기간 : 2024년 01~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강상구	741225-*****		

■ 연금저축 납입내역 (단위:원)

상호	사업자번호	당해년도 납입금액 당해년도 인출금(ISA계좌만기전환 (ISA계좌만기전환 납입금액 포함) 당해년도 인출금 납입금액중 납입금액 포함)		순납입금액 (ISA계좌만기전환 순납입금액 포함)	
계좌	번호	ISA계좌만기 전환납입금액	ISA계좌만기전환 인출금액	ISA계좌만기전환 순납입금액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116-81-05556	100	0	100	
58616	66****	0	0	0	
순납입금	금액 합계			100	

- ※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 납입액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납입액이 조회됩니다.
- 1. 연금저축(2001.1.1. 이후 가입): 근로자(사업소득자)가 가입한 연금저축의 연간 불입액 공제
- 2. 세액공제 대상금액 : 납입액(전환 신청 금액 포함)에서 인출액을 제외한 순납입액 합계
- 3. 공제 한도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순납입액을 합하여 연 900만원 한도 (단,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600만원을 한도로 함)
- 4. 연금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기관에서 연간 납입액을 제출합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내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조회기간 : 2024년 01 ~ 12월)

■ 차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강상구	741225-****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내역

(단위:원)

취급기관 (사업자번호)	대출종류 (상품명)	최초차입일 최종상환 예정일	상환 기간	주택 취득일	저당권 설정일	연간합계액	소득공제 대상액
(사업사인모)		차입금	고정금리 차입금	비거치식 상환차입금	당해년 원금상환액		
한국주택금융공사 (104-81-86269)	기존주택구입 (아낌e보금자리론)	2020-10-30 2050-10-30	30년	2022-05-13	2022-05-13	4,260,801	4,260,801
	9) (아낌e보금자리론) 200	200,000,000	200,000,00	200,000,000	7,222,215	, ,	

- 1. 공제 대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2023.12.31. 이전은 3억원 이하, 2014.1.1.~2018.12.31. 4억원, 2019.1.1.~2023.12.31. 5억원)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도시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 ※ 주택소유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며, 본인 명의 차입금이 공제대상임
- 2. 공제한도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와 합하여 차입연도, 상환기간 및 상환종류 등에 따라 연 6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1800만원, 2000만원 한도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